

「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영길, 김정도, 김재우, 박세채,
이명희, 이정희, 추은희, 허민근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책무(안 제3조)
- 시범사업의 실시 등(안 제5조의2)
- 주차시설 설치(안 제7조)
- 무단방치 금지 등(안 제8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(별표 1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, 제36조
 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훼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·보관 절차 및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, 시범사업 근거 명시 및 이용자 안전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, 주차구역 주변의 무단방치가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사전 수요 조사와 이용률 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와 업체 간 혼선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집행부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, 시민 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주차구역의 확충과 이용자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견인 및 보관·관리를 담당할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인력 충원, 민간위탁 등 보완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